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6조 및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3조에 따라 실시 예정인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강 북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25. 12. 15.(월) ~ 2026. 1. 2.(금) 9:00 ~ 18: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2. 열람장소 : 삼양동 주민센터 1층 (강북구 솔매로 69)

3. 열람내용 :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가. 선거권에 대한 사항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기재사항의 누락·오기, 명의이전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서식1]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2) 제출서류

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서식2]

나)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나)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 제출서류

가)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서식3]

나) 위임하는 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류 각 1부

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해외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마.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에 관한 사항

명부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열람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서식(이의신청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등)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강북소개 > 강북소식 > 고시공고)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cafe/mainIdx.do?cafeUrl=mia791>)에서 확인 가능하며,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02-901-2552)

[서식1]

이의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2. 이의신청 내용

붙임 : 증빙자료 1부.

상기 본인은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열람한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 ㄹ ㅁ ㅂ

신청인 : 지장날인

강북구청장 귀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적 (㎡)
		(계 필지)	
		()	
		()	
		()	
권리 내역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와 관련한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② 성 명 :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③ 성 명 :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제출해야만 선거권이 있음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3]

위임장 · 대리인 지정서

신청인 (위임하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위임하는 자)과의 관계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중 성년자 ☐ 해외거주자인 토지등소유자 ☐ 법인인 토지등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 · 예비감사 선거**의 선거권자로서 법률이 정한 권한을 행함에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202 年 1 月 1 日

신청인 : 지장날인

- 붙임 : 1.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류 등) 1부.

강북구청장 귀하